

제 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12.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81호로 2016년 11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지방
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안 제명)

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 변경

다. 정책결정을 위한 위원회 등에 특정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예방 (안 제7조)

라. 모성보호에서 모·부성의 권리보장으로 확대(안 제12조)

- 마. 여성친화적 도시 공간·시설 및 구성·운영 조항 신설
(안 제14조의2 ~ 안 제14조의4)
- 바. 지원 대상을 단체에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
(안 제15조)
- 사.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에서 심의·조정으로 변경(안 제18조)
- 아. 양성평등기금의 내용 변경(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안 제35조, 안 제37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 1이상 참여토록 하는 사항 등
- 자. 타 조례에 중복된 내용 삭제(안 제13조, 안 제16조)
 - 아동보육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24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51조(비영리,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영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6. 10. 6. ~ 10. 26.)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체계에 맞춰 양성평등의 참여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 현 조례 중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남녀평등”은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함.
- 기존의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방향, 자원조달, 운용 방안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
-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권리를 여성에서 모·부성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보장함.

- 여성친화적이며 양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신설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양성 평등 참여 확대 및 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토록 함.
- 위원회의 기능을 구청장의 자문에서 양성평등정책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으로 변경하고
-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고 간사 및 회계공무원의 행정직위 명칭을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정비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시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지출금액을 10분의 5 이하에서 10분의 2 이하로 조정함.
- 타조례에 중복되는 아동보육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조항 폐지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 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6.22.>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 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

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전 조항- 아래)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